

[√]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공고
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공고하니,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결정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

- 1. 공고 기간: 2016.3.9 ~ 2016.3.23
- 2. 공고 내용: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

토지 표시						공유토지분할 신청인		
시·군·구	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생년월일	주소
서구		석남동	산23-11	임야	462	고은자	1941.6.16	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20번길 12(석남동)

2016년 3월 9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